

## 민원조사 결과

구분	지적 및 조치 요구
<b>예술정책과</b>	<p>○ ●●협회 보조금 횡령 등 수사가 장기간(4년 이상) 지연 중이고, 횡령 등 의혹이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, ●●협회 및 소속 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 조치 필요성 등을 예술정책과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</p> <p>☞ 예술정책과는 보조금 횡령 수사가 진행 중인 ●●협회 및 서울지부에 대해, 보조금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 바람(통보)</p>
<b>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</b>	<p>○ 성범죄자가 주요구성원으로 있는 단체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 등이 발생치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</p> <p>☞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단체(지회 포함) 주요구성원이 성범죄자일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등이 가능토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바람(통보)</p>
<b>운영지원과</b>	<p>○ 예술정책과 담당자 A은 ▲ 바쁘다는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른 민원인에게 처리상황 등에 대한 안내 없이 장기간 민원처리를 지연한 점, ▲ 수차례 제기된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·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를 위배하여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</p> <p>☞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을 위배한 것으로서,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(A) “경고” 조치</p>